

연구자복지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정민영(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1. 들어가며

법률 등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헌법이 우리 실정법의 체계에서 최고 규범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하위법에 대하여 그 존재 근거인 동시에 효력 근거가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등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다. 어떠한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이익이 헌법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그 입법의 정당성이 커진다는 점 또한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¹⁾.

2021년 발표된 ‘연구자 권리 선언’은 많은 연구자들이 생활불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구자들의 생활 기반이 불안해지면서 학생들이 대학원에 점점 진학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학문공동체가 붕괴할 위험으로 치달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었고, ‘권리선언’은 연구자들이 차별받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지식 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연구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²⁾.

연구자권리선언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연구자들의 이른바 ‘연구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있다. 권리선언 제9조에서는 학문의 독립성, 자생성,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헌법에 따라 입법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정보라, “연구자 권리선언이 나오기까지”, 한겨레 2021. 10. 25.

제9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체 사회를 대표하여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문의 독립성, 자생성,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항 국가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연구 공간, 자료 접근성, 강의와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항 국가는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확대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연구자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항 국가는 연구자가 학문 및 교육 분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5항 국가는 연구자 관련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6항 국가는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여러 사회 보험과 연구자 생애 주기에 맞는 재정 지원 등의 제공, 재생산 권리 보장, 연구자를 위한 사회 주택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자 권리 선언 중 일부(제9조)>

위 내용에서 보듯, 연구자의 권리와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은 학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다종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까지 나아간다. 권리선언 제9조 제6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의 사회보험과 생애주기에 맞는 재정지원 등의 제공, 재생산 권리 보장, 사회주택 제공 등까지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연구자 복지라는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구자복지법 제정 논의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연구자복지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들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나 책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는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연구자복지법의 헌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고 해서 그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연구자복지법의 헌법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연구안전망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2. 학문 연구자의 권리 등과 관련한 헌법 규정 등

가.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 이해되고, 구체적으로는 ① 연구(진리탐구)의 자유, ② 강의(강학 또는 교수)의 자유, ③ 연구발표의 자유, ④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일반적으로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문의 자유는 국가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내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기보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보다는, 학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볼 때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안전망 마련을 비롯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의 근거로 이 헌법 조항을 들기에는 논리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조해볼 필요도 있다. 독일에서는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가 객관적인 법질서(objectiv-rechtlich)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가 학문을 보호하고 장려(재정지원)하며 연구자가 공공자원과 연구운영기관에 참여하는 것도 보장한다(BVerfGF 111, 333(354))³⁾고 해석한다. 국가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연구기관의 사무를 고려하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류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의 해석론 중에도, 헌법 제22조 제1항이 밝히고 있는 학문의 자유는 ‘학문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예술정책을 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연구자 복지 관련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조문에서 보듯, 위 22조 제2항은 내용상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에 대한 해석론 역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이들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헌법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헌법재판소 역시 위 헌법 제22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심사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위 조항과 연결하여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여부를 판단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⁵⁾.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에 연구자가 포함될 수 있을지

헌법 제22조의 형식을 보면,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문과 예술의 자

3) 정문식, 학문의 자유와 입법정책, 법과정책연구 제6권 제2호(2007)에서 재인용

4) 이와 관련해 정종섭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와 관련하여 오늘날 예술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정의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표현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예술가를 법적 의미로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표현행위의 결과를 권리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권리로 보장하면 충분하고 따로 예술가의 권리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344-345면, 공수진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에서 재인용.

5) 공수진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175호(2019)

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술가의 권리 외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 역시 제2항의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도 연구자들이 논문 등의 학문 저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자의 권리 역시 이 조항에서 '법률로써'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2) 헌법 제22조에 제2항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지적 재산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상당히 있다⁶⁾.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헌법조항과 관련하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할 뿐 아니라, 이들 저작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200). 이보다 조금 더 넓게, 저작자 등의 “권리”란 저작, 발명, 과학기술,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새기는 견해도 있다⁷⁾.

다만 조금 더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또한 제기된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법률로써 보호되는 저작자 등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승흠이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2017)”에서 전

6) 양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에 자유권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급부청구권 및 절차적 보호를 위한 청구권 등이다.”(양건, 「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11, 461면)고 하여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유권만이 아니라 사회권이나 청구권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 김철수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의 권리는 그 성질상 자유권 그 자체는 아니나, 학문과 예술의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인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호된다.”(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권 정신편)」(박영사, 2013, 841면)고 밝히기도 했다.

7) 공수진, 앞의 논문

개한 해석론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바 있다. 뒤이어 오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라는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 보호를 규정하였다면, 그것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권리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예술가의 권리”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가에게 보장되는 제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되는 권리가 모든 사람의 일원인 ‘예술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문구대로 특정될 수 있는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 그들만의 고유한 권리인 것이다.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에게 특유한 권리가 문제되는 국면은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이 성장하여 다른 사회적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예술가의 존재 이유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예술가가 독립된 직업으로 성장하면서 예술가에게 특정한 권리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를 독립적인 직업 범주로 성장시킨 사회적 동력이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다른 사회적 요소와 충돌하는 지점을 만들어낸다.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 계층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회적 요소와 충돌하면서 예술가의 권리보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논지에서 황승흠은 “이러한 헌법적 프레임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근로자조합 조항은 “법률로써”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의 보호에 관한 것, 정부의 예술지원에서 있어 차별금지에 관한 것,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확장하는 것, 예술가조합을 도입하는 것 등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보호될 필요가 있는 예술가의 권리라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⁹⁾.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에 연구자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위와 비슷한 논리를 연구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

8) 황승흠,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법학논집 제24권 제2호, 2017

9) 황승흠, 같은 논문

작물을 생산하는 연구자들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연구자들의 처우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문화국가의 원리

대한민국헌법 전문[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하여 문화 국가의 이념을 강조하는 한편,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 문언에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위 내용들은 다양한 모든 문화를 국가가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¹⁰⁾.

이에 더하여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¹¹⁾) 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조성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복지 정책 또는 생활예술 정

10) 이인호, “문화에 대한 국가개입의 헌법적 한계”,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4.

1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책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¹²⁾.

헌법재판소 역시 문화국가의 원리가 갖는 함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결정문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가 1등 참조).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참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국가지원예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12) 성중탁,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방향”,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21)

(3)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수혜적 행정행위이자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배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문화예술 심의에 내재된 전문성과 주관성으로 인하여 분배의 기준 설정이나 적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와 같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원사업 내용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심의에서 일절 배제되도록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차별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들에서도, 문화국가원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427, 445-446 참조]”, “이러한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 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들은 넓은 의미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 2003헌가1 등).

3. 결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담아내기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가 그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온 만큼, 이제는 헌법 조항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고 있다. 학문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이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노력과 별개로 현행 헌법 조항과 해석론을 통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구자복지법의 목표와 지향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연구자복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총론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